

우리나라 女性犯罪에 관한 基礎的 研究

- 現況分析을 中心으로 -

許 京 美*

〈目 次〉

第1章 序 論	第3節 Anomie 理論과 女性犯罪
第1節 研究目的	第4節 非行下位 文化論과 女性 犯罪
第2節 研究範圍 및 方法	第3章 女性犯罪 現況 및 問題點
第2章 女性犯罪의 原因에 關한 諸理論	第1節 女性犯罪의 現況
第1節 룬보로조의 女性犯罪論	第2節 女性犯罪 問題點
第2節 異質的 接觸理論과 女性 犯罪	第4章 結 論
	참고문헌

第1章 序 論

第1節 研究目的

各 國의 産業革命과 都市化는 많은 勞動力을 필요로 했고 이에 女性의 社會進出이 容易해지면서 女性의 役割이 多樣해지고 社會的地位 또한 格上되었다.

女性이 一次的 集團社會인 家庭 內에서만 生活할 때에는 그 接觸對象의 限界와 生活空間의 制限으로 그 時代의 社會常規에 反하는 行爲를 할 機會가 많지 않았음을 意味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卽 女性은 積極的인 社會生活을 해야 하는 男性에 比해 犯罪의 環境에 接觸 機會가 相對的으로 적음을 말한다.

실제로 世界各國의 犯罪統計는 男性犯罪에 對한 女性犯罪는 현저히 낮아 女性犯

* 부평경찰서

罪가 그 나라의 時代의 背景, 歷史의 特殊性, 女性의 地位, 近代化와 밀접한 關係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탈리아의 Lombroso(1836~1909)가 犯罪 및 犯罪者에 對한 科學的·實證的 研究를 始作한 以來로 女性犯罪에 對한 研究도 心理學的 社會學的 接近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많은 社會學的 犯罪理論이 大部分 男性犯罪에 關해서는 密度있는 研究結果가 나타나긴 했지만 女性犯罪에 關한 研究는 女性犯罪의 特殊性으로 因하여 그 限界를 보여왔다.

本 論文에서는 女性의 社會的 地位의 상승, 役割의 증대, 社會의 變化, 人間의 價値觀의 多樣化 등이 女性犯罪에 미친 影響을 諸 犯罪理論을 통하여 說明하고 나아가 各 理論의 바탕위에서 우리나라 女性犯罪 現況을 分析 하는데 目的을 둔다.

第2節 研究範圍 및 方法

女性犯罪에 關한 研究는 大部分 少年非行이나 男性犯罪의 研究와 마찬가지로 그 歷史가 깊지 못하여 諸般 資料가 充分치 못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女性犯罪에 對한 刑事政策의 觀心의 소홀로 더욱 그 研究가 미흡하다. 그러나 女性에 의한 犯罪가 增加하고 있는 現況에 이르러 이 問題를 깊이있게 研究, 分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刑事政策의 側面에서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本 研究를 위하여 必要한 資料는 法務部와 大檢察廳에서 發行하는 犯罪白書와 犯罪分析을 主資料源으로 삼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女性犯罪 特徵을 分析, 說明하기 위하여 第II章에서는 理論的 準據의 틀이 必要하다고 判斷, 女性犯罪을 說明할 수 있는 몇가지 重要한 理論들을 檢討하였다.

第3章에서는 1975年부터 1984年까지의 最近 10年 동안의 우리나라 女性犯罪의 現況을 第2章에서 提示한 理論들을 기초로 하여 體系的으로 分析하고 그 特徵과 問題點을 說明하려고 努力하였다.

第4章은 結論으로서 女性犯罪 역시 社會의 不安을 造成하는 重視한 原因임을

自覺하고 또한 女性의 一次的 役割—子女의 出產과 養育—의 崇高한 權利와 義務를 일깨워 우리나라 女性犯罪에 對한 좀 더 積極的인 研究와 社會의 觀心, 國家의 政策的 배려등이 절실함을 지적하여 以後 女性犯罪에 對한 많은 研究의 계기가 되 고자 했다.

第2章 女性犯罪의 原因에 關한 諸理論

第1節 롬브로조의 女性犯罪論

大部分의 犯罪學者들은 女性犯罪의 科學的 研究의 始初를 「女性犯罪人」 이란 책이 나온 이후로 본다.¹⁾

롬브로조는 頭蓋骨, 頭腦, 얼굴의 기형과 같은 신체적 결함과 犯罪 사이에는 密接한 관련이 있음을 알아내고(生來性 犯罪人: born criminal) 女性犯罪者도 男性만 하지는 않을지라도 身體的으로 기형이라고 했다. 即 롬브로조는 스무 명의 女性犯罪者들의 얼굴의 非對稱, 커다란 턱, 덧니, 송곳니, 언청이 그리고 움푹 들어간 앞이마 등과 같은 不規則性에 主目한다. Lombroso 는 이러한 觀察資料를 提示함으로써 生物學的으로 原始人의 표본인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을 닮은 “타고난 犯罪人들”을 證明하고자 했다.²⁾

그러나 롬브로조는 대체적으로 女性들은 一般的으로 男性들보다 犯罪性을 나타내는 率이 낮고 그들이 犯罪行爲를 할 때에는 대개 周邊環境의 영향에 의한 機會的 犯罪(Occasional crime)의 性格을 띤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女性犯罪者의 경우에는 生來性犯罪者의 예가 드물다는 것이다. 즉 女性犯罪者의 대다수는 다른 사람에 의한 暗示나 거절할 수 없는 誘惑(irresistible temptations)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全的으로 道德的 意味에서의 缺陷에 의한 경우는 드물다는

1) 慎鎮揆, 刑事政策(서울, 法文社, 1982), pp.186~189.

2) Cesare Lombroso and William Ferri The female offender, (The Fisher Union, London)p.95.

自覺하고 또한 女性의 一次的 役割—子女의 出產과 養育—의 崇高한 權利와 義務를 일깨워 우리나라 女性犯罪에 對한 좀 더 積極的인 研究와 社會의 觀心, 國家의 政策的 배려등이 絶실함을 지적하여 以後 女性犯罪에 對한 많은 研究의 계기가 되 고자 했다.

第2章 女性犯罪의 原因에 關한 諸理論

第1節 롬브로조의 女性犯罪論

大部分의 犯罪學者들은 女性犯罪의 科學的 研究의 始初를 「女性犯罪人」 이란 책이 나온 이후로 본다.¹⁾

롬브로조는 頭蓋骨, 頭腦, 얼굴의 기형과 같은 신체적 결함과 犯罪 사이에는 密接한 관련이 있음을 알아내고(生來性 犯罪人: born criminal) 女性犯罪者도 男性만 하지는 않을지라도 身體的으로 기형이라고 했다. 即 롬브로조는 스무 명의 女性犯罪者들의 얼굴의 非對稱, 커다란 턱, 덧니, 송곳니, 언청이 그리고 움푹 들어간 앞이마 등과 같은 不規則性에 主目한다. Lombroso 는 이러한 觀察資料를 提示함으로써 生物學的으로 原始人의 표본인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을 닮은 “타고난 犯罪人들”을 證明하고자 했다.²⁾

그러나 롬브로조는 대체적으로 女性들은 一般的으로 男性들보다 犯罪性을 나타내는 率이 낮고 그들이 犯罪行爲를 할 때에는 대개 周邊環境의 영향에 의한 機會的 犯罪(Occasional crime)의 性格을 띤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女性犯罪者의 경우에는 生來性犯罪者의 예가 드물다는 것이다. 즉 女性犯罪者의 대다수는 다른 사람에 의한 暗示나 거절할 수 없는 誘惑(irresistable temptations)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全的으로 道德的 意味에서의 缺陷에 의한 경우는 드물다는

1) 慎鎮揆, 刑事政策(서울, 法文社, 1982), pp.186~189.

2) Cesare Lombroso and William Ferri The female offender, (The Fisher Union, London)p.95.

것이다. 이 경우 暗示를 주는 者는 대개 愛人, 男便, 아버지 등의 男性인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의 犯罪行爲는 犯罪行爲에 대한 直接 個人的인 興味에서 보다 그 男性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暗示에 따라 行動할 때는 犯罪行爲上 不確實性이 있고, 行爲 後에 곧 後悔하게 된다. 그러나 暗示는 女性交際者로부터도 받는 것을 인정한다.³⁾

女性犯罪에 있어서 抵抗할 수 없는 과도한 誘惑은 대백화점 같은 곳에서 화려하게 진열된 많은 사치품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商品竊盜를 하는 등 機會的 財產犯에서 흔히 본다고 한다.

그러나 女性 중에 極히 적은 수의 犯罪者는 心理學的 및 行爲論的 見地에서 볼 때 男性의 生來性犯罪者보다 더 큰 犯罪的 傾向性 또는 變態性을 強하게 나타내는 경우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伊太利의 格言에 「女性은 악한 경우가 드물지만 惡한 者인 경우에는 男性을 능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꼭 그대로임을 롬브로조는 인정한다. 女性犯罪者들의 殘惡性은 男性보다 더 심하고 더 세련되고 더 惡質的이라는 것이다. 본래 女性들은 母性愛, 敬虔性, 약함의 特徵이 있어 犯罪性과 거리가 먼 法인데, 이들은 이러한 內的 犯罪抑制的 傾向을 능가하는 惡性을 지니고 있어 그 惡質性이 더욱 심하다는 것이다. 한편 女性들은 女性相互간에 無觀心性이 더욱 심함으로 因해 사소한 일로 서로 욕설과 暴力行事を 더 잘한다고 한다. 이러한 욕설과 暴力行事は 原時時代의 男性들의 殺人行爲와 유사한 자연적 對抗方法이라 한다.

또한 롬브로조는 女性犯罪에는 地域的 特性이 있음을 인정한다. 이것은 女性犯罪者가 一般的으로 生來的 犯罪者(born criminal)임을 나타낸다.⁴⁾

3) 慎嶺揆, 前掲書, pp.185 ~ 189.

4) 慎嶺揆, 前掲書, pp.185 ~ 186.

第2節 異質的 接觸理論과 女性犯罪

Edwin sutherland의 異質的 接觸理論(theory of differencial association)은 犯罪行爲와 社會構造를 연결하는 메카니즘의 규명을 통한 어떻게 地域 社會間에 犯罪率의 差異가 있으며 왜 어느 特定 個人이 犯罪인이 되는가 하는 命題에 대한 研究였다.

주 環境으로서 集團이 個人에게 주는 영향의 本質과 作用을 다룬 理論으로 犯罪의 發生原因을 日常生活에서 배워서 익힌 正常的인 行爲와 같이 合當한 理由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行爲로서 犯罪를 發生케 하는 일련의 相互作用關係(Interaction relation)에 關한 論理的이고 體系的인 理論이라 할 수 있다.⁵⁾

이러한 異質的 接觸理論에 근거를 둔 Sutherland의 女性犯罪者研究는 傳統社會(traditional community)에서 女性의 낮은 地位와 타 男性들간의 接觸頻度의 어려운, 傳統社會가 要求하는 女性役割(role of women)이 女性의 犯罪를 억제하는 結果를 가져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社會가 現代化 되면서 女性役割의 증대는 女性의 社會的 地위의 향상을 가져왔고 다양한 組織과 接觸한 機會가 많아졌다. 또한 女性이 家庭의 울타리 내에서만 生活하던 것에서 벗어나 社會에서 職業을 가지게 되어 犯罪環境(criminal Environment)에 빠질 機會 또한 增加되면서 女性의 犯罪는 傳統社會보다 急増했다는 것이다. Sutherland의 女性犯罪理論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⁶⁾

- ① 女性犯罪者의 構成比率는 國家(origin of nation)에 따라 다르다.
- ② 女性犯罪者의 構成比率는 各 集團에 있어서의 兩性的 社會的 地位(social position)에 따라 다르다.
- ③ 女性犯罪者의 構成比率는 居住地域의 規模(community size)에 따라 다르다.

5) Eileen B. Leonard, Women, crime, And society(N.Y, Congman Publich), pp.99 ~ 100.

6) Leonard, Ibid, pp.109 ~ 110.

④ 女性犯罪者의 構成比率은 연령 (age)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年齡이 上昇할 수록 그 構成比率이 增加하는 편이다.

⑤ 女性犯罪者의 構成比率은 한 都市에서도 居住地域의 質 (quality of community)에 따라 다르다.

⑥ 女性犯罪者의 構成比率은 時間 (時代)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時間이 경과함에 따라 그 構成比率이 增加하는 편이다.

⑦ 젊은 犯罪者의 경우에는 家庭의 結合度 (the degree of integration in the family)에 따라 女性犯罪者의 構成比率이 달라짐을 본다.

女性犯罪者는 女性의 소속된 家庭, 組織, 集團의 變化에서 女性의 社會에 대한 또 人生의 價値觀의 變化에 따라 增加되어 왔음을 알 수 있고 Sutherland는 이러한 現象을 女性 삶의 條件 (condition of women lives)을 變化시키려는 女性들의 價値觀의 革命이라 解析하고 있는 것이다.⁷⁾

第3節 Anomie理論과 女性犯罪

이 學說은 美國의 大社會理論가 Robert.k.Merton 에 의하여 主張된 것으로 美國社會學界에 지대한 影響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犯罪行爲는 社會文化 構造 자체의 矛盾的인 條件이 행사하는 壓力에 의하여 生産되는 것이라고 한다. 즉 그것은 社會가 生産한 惡 (socially derived sin)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觀念은 일찌기 프랑스의 社會學者 Emile durkeirm이 전개한 犯罪正常說에 연결되는 것으로 여기서 使用된 아노미 (Anomie)란 말도 Durkeim이 먼저 使用했던 것이다.⁸⁾

Merton은 社會構造 (social structure)를 構成하는 두 개의 基本要素를 說明한다. 그것은 文化的으로 규정된 目標 (culturally defined goals, purpose or interests)와 制度的 規범 (institutional norms)이다. 前者는

7) Leonare, op. cit, pp.111 ~ 112.

8) 尹德重, 犯罪社會學, (서울:博英社, 1982), p.127.

사람들의 成功目標(success goals)로서 金錢的 成功(financial success)을 意味하고 後者는 그 成功目標에 도달하는 合法的 手段(legally ways)를 뜻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文化的 目標(cultural goals) 또는 成功目標(successful goals)에 대한 強調과 制度的 手段(Normative ways)에 대한 強調가 서로 달리 행해짐으로써 사람들은 犯罪行爲 등의 각종 逸脫行爲(deviant behavior)를 자행하게끔 壓力 받는다는 것으로 이데의 心理가 아노미(Anomie)라는 것이다.

이러한 Anomie의 心理狀態가 一般化되거나 널리 擴大될 때 그 社會에서 犯罪行爲 등 각종 逸脫行爲가 多發하게 될 것은 明白하거니와 이러한 Anomie의 心理狀態가 一般化되고 있을 때 그 社會를 아노미 社會(Anomie society)라고 부른다.

Merton은 이러한 아노미 社會에서 사람들이 適應 또는 反應하는 樣式은 반드시 일정하지 아니하고 각각이라 하면서 그 適應樣式(type of adaptation)을 다음 다섯가지로 說明하고 있다.⁹⁾

〈 個個人的 社會適應樣式 〉

適應樣式	成功目標에 대한 態度	制度的 手段에 대한 態度
① 同調形(Conformity)	+	+
② 改新形(Innovation)	+	-
③ 禮範形(Ritualzu)	-	+
④ 退行形(Retreation)	-	+
⑤ 反逆形(Rebellion)	±	±

9) Robert k. Merton, Social structure and social theory, (New York Press, 1960), pp.182 ~ 185.

① 同調形(Conformity)

이것은 現實의 成功目標들에 대하여 認容의 態度를 취하면서 동시에 制度的 手段(規範)도 認容하여 正常生活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든 條件이 正常的으로 許諾됨으로써 큰 不滿없이 살아가게 된다.

② 改新形(Innovation)

이들은 現實의 成功目標들을 認容하여 積極 追求하나 반드시 制度的인 手段에만 依存하는 것을 배척하고 非合法的인 方法도 認容하는 사람들이다. 社會에서의 犯罪는 주로 이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③ 禮範形(Ritualion)

이들은 순진한 셀러리맨의 경우와 같이 現實의 높은 成功目標들을 外適하면서 制度的 規範手段에 充實하여 순종적 生活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犯罪나 非行行爲에 가담하지 않는다.

④ 退行形(Retreation)

이들은 現實의 成功目標들에 대해서는 포기의 態度를 취하면서 그렇다고 制度的 規範에 適應하지도 못하고 마약이나 알콜에 中毒되거나 流浪生活을 한다.

⑤ 反逆形(Rebellion)

이들은 現實의 一部分은 認容하나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 마음의 갈등을 많이 느끼, 결국 現行制度的 改革을 主張하고 나선다. 테모와 革命謨議에 加擔하는 사람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以上の 다섯가지 유형에서 犯罪學的으로 問題示되는 것은 改新形, 退行形, 反逆形이다.

이러한 Merton의 Anomie 理論은 過去 傳統社會에서 낮은 犯罪率과 女性 價値觀과 어떤 關係가 있는가 하는 것이 焦點이 된다.

Merton은 少女와 女性들의 目標은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關係維持라는 것이다. 卽 男性의 目標이 金錢的 成功에 있다면 女性들의 文化的 目標, 價値觀은 正常的인 結婚과 家庭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傳統社會에서는 女性의 犯罪率이 낮은 理由는 女性들의 價値와 目標이

법다른 社會의 抑壓을 받지않고 合法的인 手段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그러나 社會가 急變하는 女性의 社會的 地位의 向上으로 女性의 文化的 目標가 단지 單한 家庭의 維持와 子女教育에만 限定되지 않고 社會的 目標를 追述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女性들도 男性들처럼 合法的 手段(Legally means)을 얻는데 制限을 받게되며 結果的으로 犯罪行爲를 犯하게 되어 女性犯罪率이 增加한다.

Merton의 Anomie 理論은 男性犯罪者들을 理解하는데는 別 批判이 없지만 女性犯罪者들을 說明하는데는 限界性을 指摘받고 있기도 하다. 卽 과연 女性들에게 金錢의 成功의 目標가 女性들을 抑壓하고 있는지 다른 文化的 目標가 전혀 없는지의 疑問을 낳고 있는 것이다. 특히 女性들의 賣春行爲와 單순한 들치기(Shop-lifting) 行爲등을 아노미 理論으로 說明하기란 어렵다.

第4節 非行下位 文化論과 女性犯罪

이 非行下位文化論(Subculture Theory)은 1920년대의 社會解體論(Disorganization Theory)과 社會學的 觀念의 修正이가 擴大되어 非行을 下位文化(Subculture Theory)로 說明하고 있다.¹¹⁾

Cohen은 Merton과 같은 問題意識을 가지고 犯罪의 原因(Etiology)과 社會構造에 따라 相異한 犯罪發生率의 原因들을 究明하려고 하였으나 Merton과는 달리 社會的으로 規定된 文化目標(Cultural Goals)와 이 目標를 達成하는 手段間의 艱難에서 유래하는 社會構造的 緊張(Sociostructural strain)외에 非行의 原因이 되는 다른 緊張이 非行과 犯罪의 發生과 關聯이 있다고 보았다.

非行(Delinquency) 그 自體를 目的行爲로 認識하는 Cohen은 社會階級과 非行・不法行爲 사이에 社會의 價値觀(Social value)이라는 媒介變數(Intervening variables)를 導入하여 社會階級은 價値觀의 媒介를 통하여 犯罪行爲와

10) Leonard, op. cit, p.53.

11) Cohen, Albert K. "The Sociology of Deviant Act: Anomie Theory and Beyond", America Sociological Review 1965 30:p.17.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犯罪者를 遵法者로 구별하는 要素는 社會階級 自體가 아니라 社會階級과 關聯된 社會的 價値觀(Social conception)이다.¹²⁾

Cohen은 社會에는 各階 各層의 成員들이 共有하고 있는 文化가 있는데 中產層을 中心으로 形成된 中心文化와 下流階級인 勞動者의 子女들이 가지고 있는 文化間에는 중대한 갈등(Conflicts)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있다.

이러한 葛藤(Conflicts)이 非行과 연결되는데 Cohen은 美國社會는 中產階級(Middle class)의 道德的 基準, 價値 및 文化的 目的에 의해서 支配되고 있다고 한다. 즉 美國의 모든 少年들의 行動과 業績은 다음의 9개의 中產階級の 價値基準에 의하여 評價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特徵적인 價値基準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中產層은 出世, 成功 등의 野望을 強調하며 學文의 鍊磨와 技術의 習得을 眼目으로 보아 經濟的 所得을 가져온다는 見地에서 높이 評價하며 勤勞, 節制, 規律, 將來의 큰 目的達成을 눈앞에 欲求充足의 지연, 亂暴하고 攻擊的인 行動의 抑制 및 將來에 대한 綿밀한 計劃 등을 中流階級の 家庭은 그 社會化過程을 通하여 구현하려고 勞力한다고 본다. 持히 學校는 中流階級の 價値觀을 전수하는데 있어 중추적인 役割을 한다고 본다. 自制(Self Control), 規律(Norms)의 中流階級の 價値觀을 중심으로 조직한 社會의 教育制度인 學校教育은 대부분 中流階級 출신의 教師들에 의한 中流階級の 價値觀을 전달해 준다고 한다. 卽 社會의 광범위한 支持體制는 中流階級子女들의 知識, 技術的, 社會的인 才識의 연마는 후에 치열한 競爭社會 生活에서 보상될 것임을 보장한다.

주로 非行靑少年集團을 대상으로 非行의 原因을 연구했던 Cohen의 表現대로라면 모든 어린이들은 出身成分에 關係없이 中流階級の 尺度(Measuring rod)에 의하여 評價된다. 이러한 狀況에서 勞動者出身少年들은 그들의 目的達成에 攬한 함을 알게되고 그들만의 價値觀이 통하는 集團文化를 갖게되는데 이것이 非行下位

12) 尹德重, 前掲書, pp.137 ~ 138.

文化(Delinquent subculture)이다.

Cohen 은 이 非行下位文化(Delinquent subculture)은 非公利性(Non-Utilitarian), 惡意的(malicious)이고 否定的(Negativizing)으로 特徵지어지는 순간적인 快樂主義(Shortrunhedonizm)라고 한다.¹³⁾

勞働者階級 소년의 非行下位文化(Delinquent subculture)는 集團의 자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特徵지어진다. 非行少年들의 非行은 하층소년들의 평소 중요하게 여기지만 달성할 수 없었거나 금지되었던 目的(Goals)에 대한 심리적 방어이며 中流階層의 가치에 정반대되는 것을 추구함은 이 목적을 자기들의 것으로 대치하고 이를 確認하는 方法이다.

Cohen 의 非行下位文化理論(delinquent subculturetheory)를 女性에게 適用시킬때 Cohen 은 女性들은 男性들이 느끼는 만큼 階層葛等(status frustration)을 갖지 않는다고 하며 따라서 目的達成을 이루지 못하는데서 오는 欲求不滿이 非行을 야기하는 結果에까지 이루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한다.¹⁴⁾

즉 女性들은 남성들보다 非行에의 機會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女性들의 社會的地位(Social status)는 男性들이 그의 職業的 成功(Occupational success)에 따라서 決定되는 것과는 달리 男性들과의 人間關係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한다. 이것은 女性들이 男性들과 갖는 성공적인 人間關係를 維持할 때는 非行의 機會가 없거나 적어진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Cohen 의 下位文化論(Subculture theory)를 女性犯罪者들의 性的 非行(Sexual delinquency)에 대해서 적용할 때는 과연 女性들이 男性들과의 올바른 健全한 關係(Satisfying relationship)의 부족으로만 그러한 非行을 하게 되는가라는 疑問이 있다.

非行下位文化理論(delinquent subculturetheory)의 Cloward 와 Ohlin 은 女性들의 그들의 目的達成을 위한 合法的인 機會(Legitimate opportunity)

13) 尹德重, 前掲書, pp.140.

14) Leonard, op.cit, pp.121 ~ 122.

가 차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同時에 不法的인 機會(illegality opportunity) 또한 차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 결국 非行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女性의 전체적인 犯罪率이 낮다고 說明하고 있다.

第3章 女性犯罪 現況 및 問題點

第1節 女性犯罪의 現況

1. 女性犯罪의 現況

어느 특징보다도 男性이나 女性이나의 구분은 犯法者와 犯法者를 구분하는 가장 정확한 尺度라고 볼 수 있어 男性에 의한 犯罪發生件數는 女性에 特有한 關係가 있는 嬰아殺害나 落胎 등을 제외하고는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어느 種類의 犯罪나 어느 年齡層에 있어서도 女性犯罪件數를 上向하고 있다.

美國의 例를들면 男性의 逮捕率은 女性보다 10 배나 높으며 據傳斯에 相當된 경우는 男性犯罪人數가 20 배가 높다. 犯罪者의 性的 構成比는 國家와 文化에 따라서 달라 벨기에는 女性의 342 배, 알제리는 274 배이다.¹⁵⁾

男女間의 經濟的 地位의 격차가 해소되어지며 그와 比例하여 女性의 犯罪도 增加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女性의 地位가 向上된 西歐나 美國에서는 女性의 犯罪가 男性犯罪數에 肉薄하고 있다.¹⁶⁾

우리나라 女性犯罪의 現況을 보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傳統的인 儒敎社會에서 생활하는 우리나라 女性들이 급격한 近代化에 따른 社會進出과 人間價値觀의 文化 등 여러 原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5) National police Agency, Juvenile Delinquency in Yoday's Japan and As Countermeasures, (Tokyo:1969), p.21.

16) Freda, Adler, Sisters in crime The Rise of the New Female Criminals, (N.Y.No Crow Hil, 1975), p.15.

가 차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同時에 不法的인 機會(illegality opportunity) 또한 차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 결국 非行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女性의 전체적인 犯罪率이 낮다고 說明하고 있다.

第3章 女性犯罪 現況 및 問題點

第1節 女性犯罪의 現況

1. 女性犯罪의 現況

어느 특징보다도 男性이나 女性이나의 구분은 犯法者와 犯法者를 구분하는 가장 精確한 尺度라고 볼 수 있어 男性에 의한 犯罪發生件數는 女性에 特有한 關係가 있는 嬰孩殺害나 落胎 등을 제외하고는 東西古今을 莫論하고 어느 種類의 犯罪나 어느 年齡層에 있어서도 女性犯罪件數를 上向하고 있다.

美國의 例를들면 男性의 逮捕率은 女性보다 10 배나 높으며 據傳斯에 相當한 경우는 男性犯罪人數가 20 배가 높다. 犯罪者의 性的 構成比는 國家와 文化에 따라서 달라 벨기에는 女性의 342 배, 알제리는 274 배이다.¹⁵⁾

男女間의 經濟的 地位의 격차가 해소되어지며 그와 比例하여 女性의 犯罪도 增加하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女性의 地位가 向上된 西歐나 美國에서는 女性의 犯罪가 男性犯罪數에 肉薄하고 있다.¹⁶⁾

우리나라 女性犯罪의 現況을 보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傳統的인 儒敎 社會에서 생활하는 우리나라 女性들이 급격한 近代化에 따른 社會進出과 人間價 值觀의 文化 등 여러 原因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5) National police Agency, Juvenile Delinquency in Yoday's Japan and As Countermeasures, (Tokyo:1969), p.21.

16) Freda, Adler, Sisters in crime The Rise of the New Female Criminals, (N.Y.No Crow Hil, 1975), p.15.

〈表 3-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65년에서 1984년에 이르는 20년간에 우리나라의 전인구가 약 1.4배 증가한데 비해 犯罪發生數는 1.8배 증가했고 인구가 약 1.4배 증가한데 비해 犯罪發生數는 1.8배 증가했고 인구 10만명당 犯罪發生件數는 1965년의 1,545에서 1984년의 1,981로 약 1.28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동 기간중 女性犯罪 發生件數와 女性人口 10만명에 대한 犯罪發生數는 63,463건에서 101,594건으로 인구 10만명당 4.45인에서 5.50인으로 늘어나 각각 1.6배나 1.13배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동 기간중의 女性犯罪 發生件數의 증가는 전체 女性人口의 증가에 비례하며 또한 전체 犯罪發生件數에 있어서도 그 構成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表 3-1〉 女性犯罪 發生現況(1965 ~ 1984)

年 度	發生件數	指數	總人口	人口比	女性犯罪 人	指數	女性人口	女性比
1965	443,411	100	28,705,000	1,545	63,464	100	14,252,000	4.45
1970	323,537	75	32,241,000	1,035	46,093	73	15,656,000	2.94
1975	387,207	87	35,281,000	1,097	50,677	80	17,515,000	2.89
1976	504,630	114	35,849,000	1,408	68,007	107	17,790,000	3.82
1977	506,545	114	36,412,000	1,391	65,308	103	18,062,000	3.62
1978	513,165	116	36,969,000	1,388	60,610	96	18,332,000	3.31
1979	555,793	125	37,534,000	1,481	62,847	99	18,605,000	3.38
1980	595,277	134	38,124,000	1,561	81,049	128	18,888,000	4.29
1981	625,384	141	38,723,000	1,616	86,937	137	19,184,000	4.53
1982	658,371	148	39,331,000	1,674	91,421	144	19,484,000	4.69
1983	786,553	177	39,951,000	1,169	93,248	147	19,789,000	4.71
1984	803,792	181	40,538,000	1,981	101,594	160	20,098,000	5.05

資料：法務研修院，犯罪自書，(1965-1984)。

다.¹⁷⁾

2. 犯罪別 女性犯罪 現況

女性犯罪者를 刑法犯과 特別法犯으로 구분할 때 <표 3-2>와 같다. 女性刑法犯의 전체 刑法犯은 1975년부터 1977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78년에는 전년도보다 감소했고 다시 增加하여 1981년에는 55,420명으로 정점을 이루었고 그 후 약간 감소현상을 보이다가 1984년에 55,673명으로 1975년보다 무려 29,846명이 증가했다.

罪質別로 區分하여 보면 財産犯罪가 全體刑法犯의 半以上을 차지하고 있다. 1975년에 財産犯이 全體刑法犯의 53.7%를 차지하였고, 1984년에는 54.2%를 차지하였다.

女性刑法犯의 半以上을 財産犯이 차지하는 것은 女性犯罪의 原因이 大部分이 經濟的 要素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美國의 경우에도 全體女性犯罪中 財産犯(Property crimes)으로 기소된 女性犯罪者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1955년 8.36%, 1960년 10.76%, 1965년 14.99%, 1970년 19.71%를 보이고 있어 女性犯罪中 經濟的 要因의 占有率이 增加함을 나타내고 있다.¹⁸⁾

다음으로 높은 占有率을 보이고 있는 것은 強力犯과 風俗犯으로서 1975년에 強力犯은 17.2%, 風俗犯은 11.3%를 차지하였다. 1984년에는 全體女性刑法犯의 19.0%를 차지, 1975년 보다 7.7%增加 現狀을 나타내고 있다.

強力犯의 종류를 殺人, 強姦, 強盜, 放火로 구분할 때 殺人은 전체의 20.3%를 차지하고 있다. 強盜의 경우 1984년에는 1.9%로 감소현상을 보이거나 양적으로 18명이 增加, 55명이다.

17) 1965년부터 1984년 기간에 남성범죄발생건수는 1965년에 379,947건에서 1984년의 702,198건으로 약 1.82배 증가하여 여성범죄보다 높은 범죄발생율을 보인다. 法務研修院, 犯罪白書, 1984.

18) Leonard, op.cit, p.27.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女性刑法犯의 大部分이 財産犯, 強力犯, 風俗犯인 것은 우리나라 女性犯罪者의 중요한 특징으로서 女性犯罪의 절반이상을 財産犯이 차지하는 것은 女性의 經濟生活의 擴大와 함께 女性就業의 增加 등이 第一次的인 要因이 될 것이다.

〈表3-2〉

女性 刑法犯 發生推移（1975～1984）

年型	總計	盜劫	強盜	誘拐	姦淫	公娼	風俗	過失	其他	合計														
指數	%	指數	%	指數	%	指數	%	指數	%	指數														
1975	25,728	100	13,886	100	53.7	3,936	100	17.2	629	100	2,43	92	100	0.36	2,930	100	11.3	1,590	100	6.15	2,764	100	10.7	
1976	32,056	100	127	18,192	100	55.0	4,568	116	13.8	742	118	2.24	138	150	0.42	4,293	146	12.9	2,076	131	6.28	3,046	110	9.21
1977	33,061	100	128	16,676	100	50.4	4,749	121	14.4	741	118	2.24	75	82	0.23	4,854	156	14.7	2,950	186	8.92	3,016	109	9.12
1978	31,580	100	122	15,390	100	48.7	4,532	115	14.4	643	102	2.03	53	58	0.17	4,939	169	15.6	3,321	208	10.5	2,712	98	8.59
1979	32,275	100	125	15,283	100	47.4	4,393	112	13.6	716	114	2.22	54	59	0.17	6,063	206	18.8	2,907	133	9.00	2,949	103	8.83
1980	44,275	100	171	25,056	100	56.6	4,306	126	11.2	893	142	2.01	60	65	0.14	6,931	237	15.7	3,195	201	7.22	3,177	114	7.18
1981	56,420	100	218	33,777	100	59.9	6,102	155	10.8	1,114	177	1.97	75	78	0.13	7,636	261	13.5	3,439	216	6.09	4,275	155	7.58
1982	54,576	100	211	30,825	100	56.5	6,468	164	11.9	1,254	199	2.29	82	89	0.15	8,567	292	15.6	2,643	166	4.84	4,737	371	8.67
1983	51,430	100	199	27,649	100	53.8	6,161	154	11.9	1,198	190	2.33	68	74	0.13	9,124	308	17.8	2,644	166	5.13	4,569	166	8.32
1984	55,673	100	216	30,181	100	54.2	6,455	165	11.7	1,467	233	2.63	97	105	0.17	10,562	360	19.0	2,128	133	3.64	4,732	171	150

資料）・法務研修院，犯罪白書，1985～1984。
 ・大檢察廳，犯罪分析，1976～1984。（通巻 第55號～98號）

年度別 女性犯罪 原因

原因 年度	總計	小計	利 欲				怨 恨	家 庭	誘 惑	愚 然	既 樂	醉 中	其 他
			生活品 充 當	遊樂費 充 當	虛 榮 奢 侈心	射 幸心							
1975	50,677 (100)	11,483 (22.4)	9,347 (19.2)	895 (1.8)	710 (1.4)	560 (9.2)	4,666 (9.2)	612 (6.2)	372 (0.9)	4,232 (8.4)	40 (0.1)	544 (1.1)	28,203 (55.7)
1976	68,007 (100)	15,708 (23.1)	12,732 (20.2)	1,131 (1.7)	845 (1.2)	893 (1.3)	4,090 (6.9)	657 (1.0)	579 (0.9)	5,660 (8.3)	49 (0.1)	678 (1.0)	39,093 (57.5)
1977	65,308 (100)	12,860 (19.7)	10,897 (16.7)	1,131 (1.7)	832 (1.3)	1,142 (1.7)	3,920 (6.0)	697 (1.1)	591 (0.9)	5,503 (8.4)	36 (0.1)	599 (0.9)	39,960 (61.2)
1978	60,619 (100)	10,295 (17.0)	8,860 (14.6)	782 (1.3)	653 (1.1)	987 (1.6)	3,163 (5.2)	599 (1.0)	564 (1.0)	5,886 (9.7)	23 (0.04)	626 (1.0)	38,417 (63.5)
1979	62,847 (100)	9,596 (15.3)	8,417 (13.4)	581 (0.9)	598 (1.0)	1,018 (1.6)	2,760 (4.4)	638 (1.0)	630 (1.0)	5,449 (8.7)	8 (0.01)	577 (0.9)	42,121 (67.0)
1980	81,049 (100)	13,639 (16.8)	12,168 (15.0)	529 (0.9)	742 (0.9)	1,330 (1.6)	2,109 (3.8)	686 (0.8)	790 (1.0)	5,640 (7.0)	18 (0.02)	666 (0.8)	55,171 (68.1)
1981	86,907 (100)	9,736 (11.2)	8,276 (9.5)	703 (0.8)	757 (0.9)	1,315 (1.5)	3,405 (3.9)	665 (0.8)	794 (0.9)	5,753 (6.6)	15 (0.01)	821 (0.9)	64,403 (74.1)
1982	81,421 (100)	12,136 (13.3)	10,332 (11.3)	1,003 (1.1)	891 (0.9)	1,527 (1.7)	4,777 (9.2)	959 (1.0)	1,148 (1.3)	7,926 (8.7)	7 (0.01)	1,180 (1.3)	61,761 (67.6)
1983	93,248 (100)	18,025 (19.3)	15,532 (16.7)	1,276 (1.4)	1,217 (1.3)	2,398 (2.6)	5,926 (6.4)	1,255 (1.3)	1,895 (2.0)	19,342 (20.7)	17 (0.02)	1,424 (1.5)	42,966 (46.1)
1984	101,594 (100)	17,207 (16.9)	15,057 (14.8)	1,054 (1.0)	1,096 (1.1)	2,708 (2.7)	6,283 (6.2)	1,304 (1.3)	1,951 (1.9)	22,378 (22.0)	16 (0.02)	1,426 (1.4)	48,321 (47.6)

資料) · 大檢察廳, 犯罪分析, 1976~1984 (通卷 第55號~98號) 法務研修院, 犯罪自書, 1975~1984.

第2節 女性犯罪 問題點

1. 犯罪原因別

〈표 3-4〉는 女性犯罪者의 犯罪原因 卽 犯罪動機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主目할 만한 것은 射倖心에 의한 犯罪現狀의 增加現狀이다.¹⁹⁾ 犯罪에 있어서 經濟的 동기가 원인이 되는 것은 東西를 불구하고 公同의 현상이다. 그러나 射倖心에 의한 犯罪는 그 나라의 制度, 社會 家庭生活의 양상이 변화되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射倖心이 우리나라 女性犯罪의 重要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誠實하게 勞力하여 무엇인가를 획득하려는 것보다는 적당히 일하고 또는 勞力하지 않고 目的한 것을 추구하려는 社會全體의 분위기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한다.

女性犯罪原因에서 가장 커다란 증가를 보이는 것은 偶然한 犯罪動機이다. 이것은 女性이 직접 犯罪를 계획하고 犯罪手段을 모색한다기 보다는 男性의 犯罪를 방조하거나 망을 봐 주는 등의 偶發적 犯罪에 참여하는 회수가 많아졌음을 意味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女性犯罪의 暗數犯罪라 표현하고 있다. 女性의 役割이 消極的인 한 犯罪에 따라서는 가장 핵심적인 役割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다.²⁰⁾

즉, 經濟的 貧困이나 愛人이나 父母에게 버림받았을 때 극한 感情의 動搖로 自身의 아이를 殺害하는 것이나 未婚女가 分娩 직후에 아이를 유괴하거나 죽이는 例等이다.

위 統計에서 보는 것처럼 마약이나 각성제의 中毒으로 인한 犯罪는 전체 女性犯罪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지만 이것은 마약이나 대마초, 大리화나 복용등의 直接的인 원인을 나타내는 수치일 뿐 실제로 마약, 各성제 中毒者가 아니더라도

19) 射倖心이란 요행을 바라는 것으로 偶然의 事實에 따라 財物의 得失을 다투는 射倖行爲를 말한다. 代表的 射倖行爲는 福標發行이나 賭博行爲 등을 들 수 있다.

20) P.T.Dorban, Child Stealing:A Typology of Female offender: British Journal of Crime, 1976. pp.110-116.

그것들을 使用하고 난 뒤 약해진 統制意識(Self-controlship)으로 매춘, 동성 연애, 심한 노출행위와 함께 판매금지된 아편이나 헤로인을 구입할 자금을 마련하려고 절도, 강도 소매치기와 같은 犯罪行爲는 社會의 기강을 해하는 큰 暗的 要因이 될 수 있다.²¹⁾

2. 年齡別

우리나라 女性犯罪者의 年齡別 特徵중 주목할 것은 26세부터 30세이하의 女性들의 犯罪構成比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未婚女性들의 社會進出機會가 늘어남과 동시에 개인의 價値觀이 변화되고 있음을 말한다. 즉, 국민전체의 教育수준이 높아지면서 女性에게도 教育의 機會가 확대되었고 이는 女性의 활발한 社會진출을 가능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Merton 에 의하면 이런 女性의 社會生活의 증대는 女性의 끊임없는 자아발전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을 때 男性들처럼 비합법적인 非行手段을 이용, 犯罪構成比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²²⁾

3. 教育程度

우리나라 教育法 第1條는 教育의 目的을 弘益人間的 理念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人格을 완성하고 自主的 生活能力과 公民으로서의 資質을 구유하게 하여 民主國家發展에 奉仕하며 人類共榮의 理念現實에 기여함이라 정하고 있다.

이러한 教育目的이 제대로 달성된다면 그것은 社會에서의 犯罪發生率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被教育者의 個性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教育目的이 완전하게 發揮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教育을 많이 받을수록 犯罪率이 낮아져야 한다는 家庭이 나온다.²³⁾

21) John A. Clausen, Drug Use, Robert K. Merton and Robert K. Nisbet,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New York, Har Court Braces, 1970, pp.185~226.

22) 尹德重, 上揭書, pp.122-123.

23) 尹德重, 上揭書, pp.122-123.

〈表 3-6〉은 教育정도에 따른 女性犯罪者 現況이다. 教育열이 세계 어느나라에 못지않게 높은 사회풍토임을 전제로 할 때 우선 女性犯罪者중 低學歷層의 감소 현상은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全體 人口의 高學力化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表 3-6〉

女 性 犯 罪 者 的 教 育 程 度

區分 年度	計	不就學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大學校	大學院	留學	未詳
1975	50,677 (100)	14,036 (27.7)	21,782 (43.0)	7,149 (14.1)	6,066 (12.0)	1,288 (2.5)	32 (0.1)	6 (0.01)	318 (0.6)
1980	81,059 (100)	13,121 (16.2)	35,054 (43.2)	13,845 (17.1)	13,482 (16.6)	2,514 (3.1)	51 (0.1)	3 -	2,989 (3.7)
1982	91,409 (100)	12,352 (13.5)	34,159 (37.4)	17,350 (19.0)	17,451 (19.1)	3,051 (3.4)	71 (0.1)	13 (0.01)	6,956 (7.6)
1983	93,248 (100)	11,730 (12.6)	34,567 (37.1)	18,054 (19.4)	19,081 (20.5)	3,509 (3.8)	91 (0.1)	10 (0.01)	6,203 (6.7)
1984	101,594 (100)	11,448 (11.3)	33,818 (33.3)	19,512 (19.2)	21,757 (21.4)	4,139 (4.1)	107 (0.1)	20 (0.02)	10,703 (10.6)

資料：・ 法務研修院, 犯罪白書, 1975 ~ 1984.

・ 大檢察廳, 犯罪分析, 1976 ~ 1984. (通卷 第 55 號 ~ 98 號).

女性犯罪者의 學歷이 점차 高學力化되어 같은 고등학교 學歷을 가진 女性犯罪者가 1975년에 6,066 명으로 전체의 12.0%를 구성하였으나 1982년에 19.1%, 1984년에 21.4%를 차지, 국민학교 학력 다음으로 많은 構成比를 보이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즉, 1984년을 기준으로 할 때는 학력이 높아갈수록 犯罪率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체 女性人口에서 高學力 構成比가 작은데에서도 그 이유를 說明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女性犯罪와 教育程度와의 상관성을 확실히 說明하기란 곤란하지만 일

본의 「요시마스」는 靑少年犯罪者들의 低學歷化 현상에 대하여 “不就學者는 貧困家庭에서 出生한 사람이라 하겠으므로, 그 不良化의 原因은 貧困에도 있겠지만 學校에서 教育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社會性, 道德性의 발달에 불리한 영향을 받았고, 또 文盲이기 때문에 도시생활에서 불리한 입장이 서게 되어 社會生活에 適應하기 어렵게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한다.²⁴⁾

요시마스의 주장을 女性犯罪들에게도 동일한 적용을 할 수는 있겠으나 女性들에 대한 傳統教育의 중요성이 男性들보다 덜 소홀하게 여겨져 왔었던 사실을 간과키 어렵다.

4. 生活環境別

女性犯罪者의 生活環境을 대별하여 生活程度와 家族關係로 볼 수 있다. 犯罪原因의 大部分이 經濟的 要素에 있다는 일반적인 觀念이 통계적으로 확인되는데 매년 중상류층의 犯罪構成比가 높아짐을 <표 3-7>에서 볼 수 있다.

<표 3-7>에서 처럼 下流階層의 犯罪構成比는 1975년에 92.2%에 매년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1984년에는 87.8%로 4.4%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中상류층의 犯罪構成比가 增加함을 알 수 있다.

<表 3-7> 女性犯罪者의 生活程度

生活程度 年度	計		下 流		中 流		上 流		未 詳	
	人員數	百分比	人員數	百分比	人員數	百分比	人員數	百分比	人員數	百分比
1975	50,677	100	46,703	92.2	3,690	7.3	284	0.6	-	-
1980	81,509	100	73,015	90.2	7,523	9.3	431	0.5		
1982	91,407	100	81,688	89.4	9,101	9.9	618	0.7		
1983	93,248	100	82,066	88.0	10,395	11.1	787	0.8		
1984	101,594	100	89,228	87.8	11,395	11.2	99	1.0		

資料) · 法務研修院, 犯罪白書, 1975~1984.

· 大檢察廳, 犯罪分析, (1975~1984, 通卷 第 55 號~98 號).

24) 吉益夫, 犯罪學概論, 1958, p.160.

〈表3-8〉은 女性犯罪者의 生活環境에서 家族關係와 여성범죄와의 比를 나타낸 것이다. 配偶者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女性犯罪는 女性의 심리적인 부담감과 家庭의 책임자로서의 사명감등이 女性犯罪를 가중시키는 要因이라 볼 수 있다. 〈表3-8〉에서 보는 것과 같이 結婚한 女子의 犯罪構成比 중 子女가 있는 경우가 가장 높아서 1984년에는 전체 女性犯罪의 67.6%를 점유하고 있다.

相對적으로 미혼인 女子의 犯罪構成比는 20.1%로서 매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子女를 가진 女性들의 犯罪率이 全體女性犯罪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子女의 養育費나 학비의 조달로 經濟的 부담이 한층 더 무거워져 生活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전선에 휘몰리게 되어 社會적 接觸이 활발해져 犯罪蒸發機會가 증가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²⁵⁾

그러나 단순한 經濟的 불안정으로만 既婚女性의 높은 犯罪率을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既婚女性들의 主 犯罪種과 犯罪同期와의 상관성 (Interrelation)이 먼저 조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²⁶⁾

단지 앞서의 諸統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女性들의 결혼연령기가 26세부터 28세로 하는 일반인들의 통념을 전제로 하면 結婚한 女性 즉 30대~50대까지의 女性犯罪 構成比가 全體女性犯罪의 절반 이상을 차지, 既婚 女子의 犯罪率이 높다는 것을 일부 설명할 수 있다.

또한 女性犯罪의 특성인 暗數性이나 隱蔽性 (Concealment)에 비추어 볼 때 이 통계가 犯罪가 확정되어 기소된 여성피고인만을 對象으로 계산된 것이고 보면 실제 既婚女性의 犯罪率은 더욱 높다는 結論에 이른다.²⁷⁾

25) 미국의 경우는 연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혼한 여성의 가장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26) Edwin Sutherland and Donald Cressey, Principles of Criminology, Philadelphia, Lippincott, 1947, pp. 217.

27) 이것에 대한 조사는 추후에 보충설명되어야 한다.

既婚女性의 犯罪 大部分은 그녀의 家庭, 教育程度에 따라 숨겨지는 경우가 더 많고 이때 被害者가 일차집단 구성원인 男便과 자녀들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表 3-8〉 女性犯罪者 家族關係別 犯罪構成比

區分 年 度	總 計		既 婚						未 婚		
	有 配 偶 者		離 婚		婚		死		亡		
	小 計	子女有 子女無	小 計	子女有 子女無	小 計	子女有 子女無	小 計	子女有 子女無	小 計	子女有 子女無	
1975	50,677 (100)	34,324 (67.7)	4,176 (2.9)	32,848 (64.8)	1,700 (3.4)	1,215 (1.4)	485 (1.0)	3,463 (6.8)	3,017 (6.0)	446 (0.8)	11,190 (22.1)
1980	81,059 (100)	57,502 (70.9)	2,100 (2.6)	55,342 (68.3)	3,017 (3.7)	2,118 (2.6)	899 (1.1)	5,178 (6.4)	4,602 (5.7)	576 (0.7)	15,362 (19.0)
1982	91,407 (100)	62,453 (68.3)	2,032 (2.2)	48,674 (53.2)	3,444 (3.8)	2,427 (2.7)	987 (1.1)	5,787 (6.3)	5,148 (5.6)	639 (0.7)	19,803 (21.7)
1983	93,248 (100)	62,998 (67.6)	2,254 (2.4)	60,744 (65.1)	3,834 (4.1)	2,634 (2.9)	1,140 (1.2)	5,682 (6.1)	5,108 (5.5)	574 (0.6)	20,734 (22.2)
1984	101,594 (100)	71,218 (70.1)	2,422 (2.4)	68,796 (67.7)	4,151 (4.1)	2,826 (2.8)	1,325 (1.3)	5,790 (5.7)	5,195 (5.1)	595 (0.6)	20,435 (20.1)

資料) · 法務研修院, 犯罪白告, 1975-1984.

· 大檢察廳, 犯罪分析, 1975 ~ 1984. (通卷 第 55 號 ~ 98 號)

5. 職業率

어느 개인이 일정한 職業에 종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지식, 학력, 체력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나 일단 직업에 종사하게 되면 그 사람의 경제수준, 家庭의 生活정도, 사고방식, 소질, 교우관계 등을 결정하게 되므로²⁸⁾ 직업은 범죄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직업과 범죄성과의 관계는 다원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물질수준이 높고 經濟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犯罪率은 낮고, 社會的, 經濟的 地位가 낮은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犯罪率은 높다. 그러므로 직업은 개인의 후천적 生活環境을 결정지우는데 중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그 직업의 종류에 따라 犯罪의 촉진적 要因도 되고 억제적 요인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의 선택문제 는 인간으로서 중요한 問題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表 3-9>는 우리나라 女性犯罪者의 직업을 분류한 것이다. 이것에 의하면 上공업과 무직이 반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上공업의 경우는 社會生活에서 타직종보다 대인관계가 많아 그만큼 犯罪에의 機會가 다양화되어질 수 있고 또 上공업 특유의 機會가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무직에는 가정주부를 포함한다고 할 때 일상적인 가정생활의 스트레스와 家庭의 Leader로서의 책임감이 犯罪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²⁹⁾

1975년에 全體女性犯罪의 23.9%를 차지하는 上공업이 1984년에 23.0%로 全體構成比는 0.9% 감소하였으나 양적으로는 11,277명이나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무직의 경우는 1975년보다 1984년이 2.4% 증가하였는데 무직속에는 家庭주부들과 직업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직종을 숨겨 무직으로 위장하기 때문에 다소의 변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8) 南興祐, 刑事政策, (서울, 박영사, 1980), p.189.

29) 김수길, 前揭書, p.103.

〈表 3-9〉 女性犯罪者 職業別 構成比 (1975 ~ 1984)

職業別 年度	計	勞務者	自由業	從事員	農漁業	商工業	會社員	學生	運輸員	無職	其他
1975	50,677 (100)	1,454 (2.9)	1,842 (3.6)	4,500 (8.9)	3,743 (7.4)	12,169 (23.9)	492 (1.0)	477 (0.9)	251 (0.5)	22,911 (45.2)	2,878 (5.7)
1980	81,059 (100)	1,904 (2.3)	2,753 (3.4)	5,790 (7.1)	2,982 (3.7)	22,476 (27.7)	1,000 (1.2)	680 (0.8)	720 (0.9)	32,202 (39.7)	10,552 (13.0)
1982	91,407 (100)	2,486 (2.7)	3,302 (3.6)	7,625 (8.3)	3,246 (3.5)	20,755 (22.7)	1,654 (1.8)	1,295 (1.4)	535 (0.6)	41,036 (44.9)	9,473 (10.4)
1983	93,248 (100)	2,531 (2.7)	3,686 (4.0)	8,377 (9.0)	3,289 (3.5)	22,620 (24.3)	2,042 (2.2)	1,331 (1.4)	576 (0.6)	38,938 (41.8)	9,858 (10.6)
1984	101,594 (100)	3,835 (2.8)	4,503 (4.4)	8,178 (8.0)	3,486 (3.4)	23,405 (23.0)	2,213 (2.2)	531 (0.5)	1,129 (1.1)	43,232 (42.5)	12,089 (11.9)

資料) · 大檢察廳, 犯罪分析, 1975 ~ 1984 (通卷, 第55號 ~ 98號).

· 法務研修院, 犯罪自書, 1985.

美國의 研究를 보면³⁰⁾ 1978년의 경우, 고급 전문여성직종 즉 의사, 교수, 컴퓨터라이터, 변호사 등의 犯罪率은 全體女性犯罪의 24.7%를 차지하였고 은행의 관리직이나 공무원, 레스토랑이나 작은 가게의 경영자, 전문세일, 관리직등에 종사하는 女性犯罪者率은 9.6%, 부동산업자나 일반세일직 행상인 등의 일반세일직 女性들의 犯罪率은 10.8%이며, 회사원, 은행원, 타이피스트나 유흥업소, 호텔 등의 계산원(Cashiers), 비서직, 전화교환원, 증권거래소 직원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犯罪率은 54.8%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社會生活에서 직접 현금이나 그와 비슷한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女性들일 수록 犯罪率이 높다는 것을 意味하나 一般的으로 女性의 役割(Women's role)이 변화함으로써 그에 따른 犯罪的 環境에 接觸할 機會가 증대, 많은 犯罪에 加担하게 된다는 것을 證明하는 것이다.³¹⁾

위와 같은 研究例는 <表3-9>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女性犯罪중 종업원, 상공업, 회사원 등 일반인들이 금전이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는 직종의 犯罪加擔率을 비교해 볼 때 깊은 상관관계(Inter relationship)가 있음을 알 수 있다.

第4章 結 論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女性犯罪 現況을 分析하고 그 特徵을 도출, 그 對象에 關하여 고찰해 보았다. 家庭내에서만 생활할 때에는 犯罪를 行할 機會가 많지 않았고 또한 女性犯罪의 對象도 男便이나 子女, 시부모 등이 주를 이루었다.

30) A. Statlistical Portrait of Women in the Vnited States: 1978 Washir gton, D.C: U.S Dept. of Commerce Burean of the Census, 1980) Table.8-1 (이는 전체 미국여성중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31) Leonard op.cit, pp.20-22.

美國의 研究를 보면³⁰⁾ 1978년의 경우, 고급 전문여성직종 즉 의사, 교수, 컴퓨터라이터, 변호사 등의 犯罪率은 全體女性犯罪의 24.7%를 차지하였고 은행의 관리직이나 공무원, 레스토랑이나 작은 가게의 경영자, 전문세일, 관리직등에 종사하는 女性犯罪者率은 9.6%, 부동산업자나 일반세일직 행상인 등의 일반세일직 女性들의 犯罪率은 10.8%이며, 회사원, 은행원, 타이피스트나 유흥업소, 호텔 등의 계산원(Cashiers), 비서직, 전화교환원, 증권거래소 직원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犯罪率은 54.8%를 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社會生活에서 직접 현금이나 그와 비슷한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女性들일 수록 犯罪率이 높다는 것을 意味하나 一般的으로 女性의 役割(Women's role)이 변화함으로써 그에 따른 犯罪的 環境에 接觸할 機會가 증대, 많은 犯罪에 加担하게 된다는 것을 證明하는 것이다.³¹⁾

위와 같은 研究例는 <表3-9>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女性犯罪중 종업원, 상공업, 회사원 등 일반인들이 금전이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는 직종의 犯罪加擔率을 비교해 볼 때 깊은 상관관계(Inter relationship)가 있음을 알 수 있다.

第4章 結 論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女性犯罪 現況을 分析하고 그 特徵을 도출, 그 對象에 關하여 고찰해 보았다. 家庭내에서만 생활할 때에는 犯罪를 行할 機會가 많지 않았고 또한 女性犯罪의 對象도 男便이나 子女, 시부모 등이 주를 이루었다.

30) A. Statlistical Portrait of Women in the Vnited States: 1978 Washir gton, D.C: U.S Dept. of Commerce Burean of the Census, 1980) Table.8-1 (이는 전체 미국여성중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

31) Leonard op.cit, pp.20-22.

그러나 犯罪社會學者들의 女性的 社會進出은 女性犯罪의 量的 增加 뿐만 아니라 質的인 變화를 가져왔다. 롬브로조는 女性犯罪者는 生來的犯罪(Dorn Criminal)이기 보다는 機會的犯罪(Occasional Criminal)라고 表現하면서 女性犯罪의 原因을 生理적 特徵性에 力點을 두어 說明하고 있다. 또한 異質的 接觸理論(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에서는 女性的 犯罪은 그녀의 環境, 接觸相對, 頻度 등에 따라서 다르며, 女性役割의 多樣化에 다른 接觸對象의 增加로 女性犯罪가 增加한다고 한다. 그러나 Anomie理論은 女性的 社會生活에 따른 價値觀의 混亂 즉 合法的으로 目的을 成就시킬 수 없을 때 犯行을 하게 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犯罪原因으로 各國의 女性犯罪原因 및 特性을 說明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各國의 文化, 傳統, 經濟狀態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女性犯罪의 年齡層은 30代부터 50代 以下가 主를 이루고 있으며 犯罪別로는 財產犯, 風俗犯, 暴力犯 順이다.

財產犯이 많다는 것은 經濟的 原因 때문에 犯罪에 加擔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意味한다. 또한 女性犯罪者의 學歷이 점차 高學歷化 되어가고 있으며 生活程度도 下流層이 主種을 이루었던 것에서 점차 中上流로 擴大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 傳統的인 道德觀念에서는 女性的 犯罪率이 상당히 低調할 것으로 생각되나 實際로는 每年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다. 女性犯罪의 原因을 반드시 經濟的 要因에서만 찾을 것은 아니지만 人間이 그의 理想現實을 爲해서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與件이 造成되어야 함은 勿論이다. 그러므로 女性犯罪의 豫防을 위해서는 生活能力이 없는 家庭에 대한 經濟的 扶助가 要求된다. 또한 要保護 母子家庭은 生活支援 뿐만 아니라 職業轉導를 強化하여 自立할 수 있게 하여 經濟的 要因 때문에 犯行에 加擔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또한 여러가지 家庭問題의 相談을 위한 常設的인 相談制度도 必要하다.

女性犯罪의 豫防을 위해서 學校教育은 지식일변도의 注入式 教育을 止양하고 全人的 教育이 행해져야 한다. 教育은 女性的 經濟的 自立基盤을 다져줄 뿐만 아니라 올바른 社會生活을 할 수 있는 尺度를 심어주기 때문이다.

地域社會와 國家는 不良文化와 有害한 環境을 淨化하고 物質主義의 腐敗적 風潮를 社會에서 퇴치하여 健全한 社會風土를 造成해야 한다.

또한 社會의 그늘진 女性 즉 低所得女性, 未婚母, 淪落女性, 家出女性 등 要保護女性들에 대한 社會의 愛情과 政策的 뒷받침으로 女性犯罪의 直·間接的 要因을 事前에 除去해야 한다.

犯罪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고 하듯이 女性犯罪者의 罪는 마땅히 벌해야겠으나 犯罪原因이 무엇인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에 따른 결과로서의 대책이 도출됨으로써 밝고 명랑한 社會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장차 이 時代를 이끌어 갈 第2世 教育과 養育을 責任지고 있는 女性 問題를 解決하지 않고는 이 社會發展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라겠기 때문이다.

以上에서 本 論文은 우리나라 女性犯罪 現況을 分析함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急變하는 價値觀과 經濟狀況, 女性의 專門職 進出에 따른 特殊犯罪의 增加, 女性犯罪中 特記할 만한 賣春, 落胎, 兒教 등에 대하여 詳細한 研究가 더욱 要求된다.

以後 이에 對한 研究가 좀더 深度있게 이루어져 우리나라 女性 犯罪問題 解決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參 考 文 獻

1. 書 籍

1. 金永模, 韓國社會福祉論, 서울: 法文社, 1938.
2. 權純永, 許柱旭, 行刑學, 서울: 一潮閣, 1982.
3. 南興祐, 刑事政策, 서울: 博英社, 1988.
4. 愼鎮揆, 刑事政策, 서울, 法文社, 1982.
5. 吳世哲, 韓國人の 社會心理, 서울: 博英社, 1983.
6. 梁 健, 法社會學, 서울: 民音社, 1984.
7. 尹德重, 犯罪와 少年非行學, 서울: 博英社, 1988.
8. 尹德重, 犯 6 罪社會學, 서울: 博英社, 1984.
9. 劉在奉, 羅炳述, 兒童發達心理, 서울: 載東文化社, 1970.
10. 張乘林, 犯罪心理學, 서울: 博英社, 1971.
11. 張仁協, 兒童福祉研究院, 서울: 壽文社, 1978.
12. 鄭榮錫, 刑事政策, 서울: 法文社, 1978.
13. 崔在錫, 韓國人の 社會的 性格, 서울: 法文社, 1983.
14. 韓基諺, 教育心理, 서울: 博英社, 1982.

2. 論 文

1. 姜錫山, “女性犯罪에 관한 研究”, 碩士學位 論文請求, 忠南大學校 教育大學院, 1982.
2. 金秀吉, “韓國女性犯罪의 現況分析과 그 豫防策”, 濟州大, 論文集, 第14輯, 人文, 社會科學論, 1982.
3. 金昌培, “韓國青少年非行의 原因에 對한 研究”,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77.
4. 金永泰, “女性犯罪에 관한 研究”, 釜山大學校, 論文集, 第19輯, 人文, 社會科學篇, 1975.

5. 金信一, “福祉社會 女性教育의 方向”, 韓國女性團體協議會, 女性, 1980
6. 문영순, 이응인, “韓國女性犯罪者에 對한 實態分析”, 亞細亞女性研究, 淑明女大, 亞細亞女性問題研究所, 1964.
7. 申硯均, “韓國女性犯罪者에 關한 考察”,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75.
8. 徐京淑, 김엘림, “未婚母發生 豫防對策에 關한 프로그램 開發”, 韓國女性開發院, 1987.
9. 李相喜, “韓國女性犯罪의 原因 分析과 對策”, 延世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80.
10. 이혜성, “도전받는 女性教育”, 女性 韓國女性團體協議會, 1982
11. 유상열, “10대 未婚母와 靑少年問題”, 韓國社會福祉協議會, 社會福祉, 마을호, 1979.
12. 張素英, “未婚母에 對한 對策과 方案”, 俄山社會福祉事業財團 春秀號, 1980
13. 장인섭, “母子福祉事業의 展望과 그 政策方向”, 韓國女性團體協議會, 1980
14. 丁洛鎮, “女性犯罪”, 法政, 法文社, 1964.
15. 鄭眞和, 우리나라 女性犯罪의 現況과 그 對策”, 立法調查月報, 國會圖書館, 1974.

其 他

大檢察廳, 犯罪分析, 1975-1984.

法務研修院, 犯罪白書, 1981-1984.